

재정신청서

- 고소인(신청인, 항고인) : 임찬용
- 피의자(피고소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 피의자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인
피의자 이승민¹⁾

신청취지 및 이유

위 피의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형제24027호 (이하, ‘이 사건’)와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유정현은 2023. 1. 18.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하였고, 고소인(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23 고불항 제680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승영 역시 2023. 3. 2.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 유정현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검사 이승영의 항고기각 결정은 공히 위 피의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한 은폐 · 조작수사의 결과물들인 바, 고소인(신청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한다.

1) 고소인은 피의자 이승민의 이름을 알지 못해 이 사건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피의자 문경석의 결재권자)로 기재해 놓았으나, 2023. 1. 18.자 검사 유정현 명의로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이승민’으로 특정해 놓았다.

I. 각 입증자료 제시

가. 2022. 4. 20.자 고소장(이 사건 고소장 포함, (첨부 1))²⁾

이 사건은 고소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위 2022. 4. 20.자 고소장 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 항목에서, “가. 피고소인 문경석, 피고소인 000 등의 공동범행”에 해당된다.

나. 2022. 9. 27.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첨부 2)

다. 2022. 10. 10.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첨부 3)

라. 2023. 1. 18.자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첨부 4)

2) 이 고소장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의 범죄에 대한 고소장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이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거주하는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에 이첩하였다.

그런데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에서는 이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조작·은폐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에 몽땅 이송해 버렸다. 이와 같은 불법 이송조치는 해당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의 불법 이송 취지에 따라 이 고소장에 대해 은폐·조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서울서대문경찰서 및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피고소인별로 2개로 쪼갠 다음 이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도봉경찰서로 각각 이송해 버렸다.

그러나 위와 같이 2개로 쪼개진 이 고소장은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인 항고 형사절차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검사 이승영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마. 2023. 1. 30.자 이 사건 항고장(첨부 5)

바. 2023. 3. 2.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문(첨부 6)

Ⅱ. 위 각 입증자료에 대한 순차적 고찰 (경찰 및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해 왔음)

이 사건 수사담당자인 서울서부경찰서 경장 조민구는 그의 결재권자인 경위 이민호, 성명불상 수사과장(이하, ‘이 사건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들’이라 함)과 공모하여, 인근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관이자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바 있는 이 사건 피의자인 문경석 등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에 명백한 증거자료가 수없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마저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불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한 증거도 없다.”라는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해 버렸고,(첨부 1, 첨부 2, 첨부 3 각 참조)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유정현은 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3. 1. 18.경 이르러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이 사건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들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해 놓은 2022. 9. 27.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첨부 4 참조)

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승영 역시 이 사건 항고장이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3. 3. 2.경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항고기각결정문을 작성한 수법을 통해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첨부 5, 첨부 6 각 참조)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조작 · 은폐 수사와 관련,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22. 12. 20.자 LPN로컬파워뉴스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사건 처분 예정과 관련하여

“㉞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부경찰서장에 제출하였고, 동 이의신청서가 첨부된 수사기록은 2022. 10. 1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홍등불에게 배당되었다. (2022형제24027호)

그러나 2022. 12. 8.경 검사 홍등불로부터 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 유정현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르러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민호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각하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애당초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은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하였다.〔2022. 12. 22.자 위 신문기사 1부.(첨부 7)〕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소인의 예견대로 검사 유정현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3. 1. 18.경 이르러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민호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해 버렸고, 이 사건 항고검사 이승영 역시 2023. 3. 2.경 이르러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항고장을 기각 결정해 버렸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검사 유정현이 작성한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혀 들어맞지도 않는 대법원 결정이나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5, 2023. 1. 30.자 이 사건 항고장 제Ⅱ항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하게 형성된 대법원 결정 또는 판례를 악용함으로써 사법부에게 모욕감을 주고 말았다.

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승영 역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항고검사 이승영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장’ 중 이 사건 항고장(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 수리일자 : 2023. 2. 2.)은 물론, 그 이전에 배당받은 항고장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 다수,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259호, 수리일자 : 2023. 1. 13.) 까지 담당하고 있었다.(첨부 8)

위 2개의 항고사건(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259호 및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은 앞서 ‘주석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한 개의 고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나아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 범죄임에도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성남 검찰과 성남수정경찰서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한 개의 고소장을 2개의 사건으로 쪼개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위 2개의 항고사건은 ‘관피모 사건’의 은폐 · 조작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관피모 사건’의 동일성 및 단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범위에서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의도적으로 쪼개져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검사 이승영은 성남 검찰청과 성남수정경찰서가 의도적으로 쪼개놓은 위 2개의 사건이 항고 형사절차 단계에서 자신에게 함께 배당되었다면, 위 2개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법리를 검토하여 동시에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고검사 이승영은 위 2개의 사건에 대해 공히 명백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각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차를 두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2개의 사건 중 먼저 배당받은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사건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259호)에 대해서는 2023. 2. 15.경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해 버린 다음 (첨부 9), 이 사건 항고장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약 15일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하였다.(첨부 6)

더욱 기막힌 사실은 고소인(신청인)이 이 사건 항고장에서 검사 유정현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하여

《결국 검사 유정현은 이 사건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해 이 사건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까지 동원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히고자 하는 검사로서의 사명감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건 피의자인 문경석 외 1인을 소환하여, “고소인이 이미 제출해 놓은 구수회의 계좌 및 구수회의 처 노재숙 명의 계좌, 공범 전상화 명의 계좌까지 추적해야 할 필요성과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고발)이 고소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허위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였느냐”라고 한번쯤 물어보았어야 했었다.》며 절규하다시피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외쳐왔건만, 항고검사 이승영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참으로 항고검사 치고는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Ⅲ. 결론

이 사건은 ‘관피모 사건’ 은폐·조작 수사에 따른 범죄로서 우리나라 국법이 무너지고, 수도권 검·경이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피모 사건’ 배후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이 사건에 대한 증거관계가 확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적당한 때를 기다려 경찰서에서는 허위 내용의 (각하) 불송치 결정서, 검찰청에서는 이를 인용한 허위내용의 (각하) 불기소결정서, 고등검찰청에서도 이를 인용한 허위 내용의 항고기각 (각하) 결정문을 작성해 왔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사법정의를 훼손되고, 사회 곳곳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건브로커 및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이 사건 피의자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인 피의자 이승민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원 서울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2. 4. 20.자 고소장(이 사건 고소장 포함) 1부.
2. 2022. 9. 27.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 1부.

3. 2022. 10. 10.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1부.
4. 2023. 1. 18.자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 1부.
5. 2023. 1. 30.자 이 사건 항고장 1부.
6. 2023. 3. 2.자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문 1부.
7. 2022. 12. 22.자 LPN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 1부.
8. 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외 1인에 대한 항고장 1부.
9. 2023. 2. 15.자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외 1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1부. 끝.

2023. 3. 10.

위 신청인(고소인) 임찬용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